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상돈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7월 1일
-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3. 제안사유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
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대상 용어, 문구를 개정함. (안 제 1, 2조)
 - (현행) “~의한” → (개정) “~따른”
 - (현행) “계리(計理)” → (개정) “회계처리”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법제처)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 및 의견

- 안 제1조는, “제48조의 규정에 따라” 를 “제48조에 따라” 로 개정한 것으로, 이는 “제48조” 라는 조항 자체에 이미 규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바, 중복 사용된 용어인 “규정” 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는, “~의한” 을 “~따른” 으로 개정한 것으로,
 - “~의한” 은 수단과 방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며, ‘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’ 의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“~따른” 을 사용하도록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2조제7호는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표기인 “계리(計理)” 를 이에 대응하는 쉬운 한자어인 “회계 처리” 로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.
 - ※일본식 한자어 :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
- 본 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및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<참고자료> 충청북도금고 개요

※ 충청북도금고는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·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관리 업무를 위해 계약형식을 빌어 4년 단위로 지정한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과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,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, 지역개발기금은 NH농협은행에서, 특별회계 4개와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운영 중에 있음.

구 분	담 당 회 계
제1금고 (농협은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회계 • 특별회계(2개) : 소방, 농어촌개발기금 • 지역개발기금
제2금고 (신한은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회계(4개) : 광역교통시설, 의료급여기금, 학교용지부담금, 충청북도균형발전 • 기금(13개)